



84A

#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 건축과 - 제30105호(2023.08.3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319-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1층 3개동 총 201세대 중 일반분양 201세대

[특별공급 84세대(일반1기관추천] 20세대, 다자녀가구 14세대, 신혼부부 26세대, 노부모부양 6세대, 생애최초 1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2026년 02월 예정(단, 공사완료 시점에 따라 앞당겨질 수 있음.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성	<b>공급대상</b> (단위: 세대, ㎡)																		
즈태		모델		주택형	약식	주택 <del>공급</del> 면적(㎡)		기타	계약	세대별	총공급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최하층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전용면적기준)	표기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 계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등용면적 대회	대지지분	세대수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계	내리스 구인	우선배정 세대수
		01	084.9439A	84A	84.9439	26.0456	110.9895	53.4361	164.4256	26.0789	39	4	2	5	-	3	14	25	2
		02	084.2465B	84B	84.2465	26.2030	110.4495	52.9976	163.4471	25.8648	39	3	2	5	1	3	14	25	2
nio.	2023000442	03	084.1954C	84C	84.1954	26.7405	110.9359	52.9654	163.9013	25.8491	70	7	7	10	3	6	33	37	4
민영 주택	2023000442	04	084.9149D	84D	84.9149	28.1240	113.0389	53.4180	166.4569	26.0700	18	2	1	2	1	2	8	10	1
' '		05	084.9119E	84E	84.9119	27.3843	112.2962	53.4161	165.7123	26.0691	18	2	1	2	1	2	8	10	1
		06	084.9873F	84F	84.9873	24.7052	109.6925	53.4636	163.1561	26.0922	17	2	1	2	-	2	7	10	1
					ē	합 계					201	20	14	26	6	18	84	117	11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별 라인별	층 - 구분	해당 세대수			양금		계약금 (10%)	1호[(10%)	2호(10%)	중도금 3회(10%)	분(60%) 4회(10%)	5호 (10%)	6회(10%)	진금 (30%)
#/I	게네ㅜ	다한얼	2층	1	<b>대지비</b> 155,408,700	건축비 520,281,300	부가세 -	계 675,690,000	계약시(10%) 67,569,000	2024.02.09 67,569,000	2024,06,09 67,569,000	<b>2024.10.09</b> 67,569,000	<b>2025,01,09</b> 67,569,000	2025,05,09 67,569,000	2025,08,09 67,569,000	입주지정 <sup>4</sup> 202,707,0
			3층 4층	1	162,393,800 165,013,500	543,666,200 552,436,500	-	706,060,000 717,450,000	70,606,000 71,745,000	211,818,0 215,235,0						
			5층 6층	1 1 2	167,633,200 170,252,900 173,394,700	561,206,800 569,977,100	-	728,840,000 740,230,000	72,884,000 74,023,000	72,884,000 74,023,000 75,389,000	72,884,000 74,023,000	72,884,000 74,023,000	72,884,000 74,023,000	72,884,000 74,023,000	72,884,000 74,023,000	218,652,0
		101동 3호	7~8층 9~10층 11~12층	2 2	174,618,300 175,839,600	580,495,300 584,591,700 588,680,400	-	753,890,000 759,210,000 764,520,000	75,389,000 75,921,000 76,452,000	75,921,000 76,452,000	75,389,000 75,921,000 76,452,000	75,389,000 75,921,000 76,452,000	75,389,000 75,921,000 76,452,000	75,389,000 75,921,000 76,452,000	75,389,000 75,921,000 76,452,000	226,167,0 227,763,0 229,356,0
			13~14층	2 2	177,060,900 178,284,500	592,769,100 596,865,500	-	769,830,000 775,150,000	76,983,000 77,515,000	230,949,						
			17~18층 19~20층	2	179,505,800 180,729,400	600,954,200 605,050,600	-	780,460,000 785,780,000	78,046,000 78,578,000	234,138, 235,734,						
4	39		최상층 2층	1	181,950,700 155,408,700	609,139,300 520,281,300	-	791,090,000 675,690,000	79,109,000 67,569,000	237,327, 202,707,						
			3층 4층	1	162,393,800 165,013,500	543,666,200 552,436,500	-	706,060,000 717,450,000	70,606,000	70,606,000 71,745,000	70,606,000 71,745,000	70,606,000 71,745,000	70,606,000	70,606,000	70,606,000	211,818,
			5층 6층 7~8층	1 1 2	167,633,200 170,252,900 173,394,700	561,206,800 569,977,100 580,495,300	-	728,840,000 740,230,000 753,890,000	72,884,000 74,023,000 75,389,000	218,652, 222,069, 226,167,						
		102동 3호	9~10층 11~12층	2 2	174,618,300 175,839,600	584,591,700 588,680,400	-	759,210,000 764,520,000	75,921,000 76,452,000	227,763						
			13~14층 15~16층	2 2	177,060,900 178,284,500	592,769,100 596,865,500	-	769,830,000 775,150,000	76,983,000 77,515,000	230,949						
			17~18층 19층	2	179,505,800 180,729,400	600,954,200 605,050,600	-	780,460,000 785,780,000	78,046,000 78,578,000	234,138 235,734						
			최상층 2층	1	181,950,700 153,145,500	609,139,300 512,704,500	-	791,090,000 665,850,000	79,109,000 66,585,000	237,327 199,755						
			3층 4층	1	160,027,100 162,607,700	535,742,900 544,382,300	-	695,770,000 706,990,000	69,577,000 70,699,000	69,577,000 70,699,000	69,577,000 70,699,000	69,577,000 70,699,000	69,577,000 70,699,000	69,577,000	69,577,000 70,699,000	208,731
			5층 6층 7~8층	1 1 2	165,190,600 167,771,200 170,867,000	553,029,400 561,668,800 572,033,000	-	718,220,000 729,440,000 742,900,000	71,822,000 72,944,000 74,290,000	215,466 218,832 222,870						
		101동 2호	7~0등 9~10층 11~12층	2 2	172,072,200 173,277,400	576,067,800 580,102,600	-	748,140,000 753,380,000	74,814,000 75,338,000	74,814,000 75,338,000	74,814,000 75,338,000	74,814,000 75,338,000	74,814,000 75,338,000	74,270,000 74,814,000 75,338,000	74,270,000 74,814,000 75,338,000	224,442
			13~14층	2 2	174,480,300 175,685,500	584,129,700 588,164,500	-	758,610,000 763,850,000	75,861,000 76,385,000	227,583						
			17~18층 19~20층	2 2	176,890,700 178,095,900	592,199,300 596,234,100	-	769,090,000 774,330,000	76,909,000 77,433,000	230,727 232,299						
В	39		최상층 2층	1	179,298,800 153,145,500	600,261,200 512,704,500	-	779,560,000 665,850,000	77,956,000 66,585,000	233,868						
			3층 4층	1	160,027,100 162,607,700	535,742,900 544,382,300	-	695,770,000 706,990,000	69,577,000 70,699,000	208,731						
			5층 6층 7~8층	1 1 2	165,190,600 167,771,200 170,867,000	553,029,400 561,668,800 572,033,000	-	718,220,000 729,440,000 742,900,000	71,822,000 72,944,000 74,290,000	215,466 218,832 222,870						
		102동 2호	9~10층 11~12층	2 2	172,072,200 173,277,400	576,067,800 580,102,600	-	748,140,000 753,380,000	74,814,000 75,338,000	224,442						
			13~14층 15~16층	2 2	174,480,300 175,685,500	584,129,700 588,164,500	-	758,610,000 763,850,000	75,861,000 76,385,000	227,580						
			17~18층 19층	2	176,890,700 178,095,900	592,199,300 596,234,100	-	769,090,000 774,330,000	76,909,000 77,433,000	230,72						
			최상층 3층	1	179,298,800 156,772,600	600,261,200 524,847,400	-	779,560,000 681,620,000	77,956,000 68,162,000	233,86						
			4층 5층	1	159,302,600 161,830,300	533,317,400 541,779,700	-	692,620,000 703,610,000	69,262,000 70,361,000	207,78						
			6층 7~8층 9~10층	2 2	164,358,000 167,394,000 168,573,900	550,242,000 560,406,000 564,356,100	-	714,600,000 727,800,000 732,930,000	71,460,000 72,780,000 73,293,000	214,38 218,34 219,87						
		101동 1호	11~12층 13~14층	2	169,753,800 170,933,700	568,306,200 572,256,300	-	738,060,000 743,190,000	73,806,000 74,319,000	221,418						
			15~16층 17~18층	2 2	172,113,600 173,293,500	576,206,400 580,156,500	-	748,320,000 753,450,000	74,832,000 75,345,000	224,496 226,035						
			19~20층 최상층	2	174,473,400 175,653,300	584,106,600 588,056,700	-	758,580,000 763,710,000	75,858,000 76,371,000	227,574 229,113						
			3층 4층	1	158,612,600 161,142,600	531,007,400 539,477,400	-	689,620,000 700,620,000	68,962,000 70,062,000	206,886						
			5층 6층 7~8층	1 1 2	163,670,300 166,198,000 169,234,000	547,939,700 556,402,000 566,566,000	-	711,610,000 722,600,000 735,800,000	71,161,000 72,260,000 73,580,000	213,483 216,780 220,740						
		101동 4호	9~10층 11~12층	2 2	170,413,900 171,593,800	570,516,100 574,466,200	-	740,930,000	74,093,000 74,606,000	222,279						
			13~14층	2 2	172,773,700 173,953,600	578,416,300 582,366,400	-	751,190,000 756,320,000	75,119,000 75,632,000	225,357						
С	70		최상층 3층	1	175,133,500 157,922,600	586,316,500 528,697,400	-	761,450,000 686,620,000	76,145,000 68,662,000	228,435						
•	/0		4층 5층	1	160,452,600 162,980,300	537,167,400 545,629,700	-	697,620,000 708,610,000	69,762,000 70,861,000	209,28 212,58						
			6층 7~8층	2	165,508,000 168,544,000	554,092,000 564,256,000	-	719,600,000 732,800,000	71,960,000 73,280,000	71,960,000 73,280,000	71,960,000 73,280,000	71,960,000 73,280,000	71,960,000	71,960,000 73,280,000	71,960,000	215,880
		102동 1호	9~10층 11~12층	2 2 2	169,723,900 170,903,800 172,083,700	568,206,100 572,156,200	-	737,930,000 743,060,000	73,793,000	73,793,000 74,306,000 74,819,000	73,793,000 74,306,000	73,793,000 74,306,000 74,819,000	73,793,000 74,306,000	73,793,000	73,793,000 74,306,000	221,379
			13~14층 15~16층 17~18층	2 2	173,263,600 174,443,500	576,106,300 580,056,400 584,006,500	-	748,190,000 753,320,000 758,450,000	74,819,000 75,332,000 75,845,000	75,332,000 75,845,000	74,819,000 75,332,000 75,845,000	75,332,000 75,845,000	74,819,000 75,332,000 75,845,000	74,819,000 75,332,000 75,845,000	74,819,000 75,332,000 75,845,000	224,457 225,996 227,535
			19층 최상층	1	175,623,400 176,803,300	587,956,600 591,906,700	-	763,580,000 768,710,000	76,358,000 76,871,000	229,074						
			3층 4층	1	156,772,600 159,302,600	524,847,400 533,317,400	-	681,620,000 692,620,000	68,162,000 69,262,000	204,48						
			5층 6층	1	161,830,300 164,358,000	541,779,700 550,242,000	-	703,610,000 714,600,000	70,361,000 71,460,000	211,08 214,38						
		102동 4호	7~8층 9~10층	2	167,394,000 168,573,900	560,406,000 564,356,100	-	727,800,000 732,930,000	72,780,000	72,780,000 73,293,000	72,780,000	72,780,000	72,780,000	72,780,000 73,293,000	72,780,000	218,34
			11~12층 13~14층 15~16층	2 2 2	169,753,800 170,933,700 172,113,600	568,306,200 572,256,300 576,206,400	-	738,060,000 743,190,000 748,320,000	73,806,000 74,319,000 74,832,000	221,41 222,95 224,49						
			17~18층 19층	2	173,293,500 174,473,400	580,156,500 584,106,600	-	753,450,000 758,580,000	75,345,000 75,858,000	226,03						
			최상층 2층	1	175,653,300 161,368,000	588,056,700 540,232,000	-	763,710,000 701,600,000	76,371,000 70,160,000	229,113						
			3층 4층	1	168,619,900 171,338,500	564,510,100 573,611,500	-	733,130,000 744,950,000	73,313,000 74,495,000	219,93 223,48						
			5층 6층	1	174,059,400 176,778,000	582,720,600 591,822,000	-	756,780,000 768,600,000	75,678,000 76,860,000	227,034						
D	18	103동 1호	7~8층 9~10층	2	180,041,700 181,311,300	602,748,300 606,998,700	-	782,790,000 788,310,000	78,279,000 78,831,000	234,83						
			11~12층 13~14층 15~16층	2 2 2	182,580,900 183,850,500 185,120,100	611,249,100 615,499,500 619,749,900	-	793,830,000 799,350,000 804,870,000	79,383,000 79,935,000 80,487,000	238,14 239,80 241,46						
			17~18층 최상층	2	186,387,400 187,657,000	623,992,600	-	810,380,000 815,900,000	81,038,000 81,590,000	243,11 244,77						
			2층 3층	1	160,307,700 167,511,300	536,682,300 560,798,700	-	696,990,000 728,310,000	69,699,000 72,831,000	69,699,000 72,831,000	69,699,000 72,831,000	69,699,000 72,831,000	69,699,000	69,699,000 72,831,000	69,699,000 72,831,000	209,09
			4층 5층	1	170,213,800 172,916,300	569,846,200 578,893,700	-	740,060,000 751,810,000	74,006,000 75,181,000	222,01 225,54						
E	18	103동 2호	6층 7~8층	1 2	175,616,500 178,859,500	587,933,500 598,790,500	-	763,550,000 777,650,000	76,355,000 77,765,000	229,06						
			9~10층 11~12층	2 2	180,119,900 181,380,300	603,010,100	-	783,130,000 788,610,000	78,313,000 78,861,000	234,93						
			13~14층 15~16층 17~18층	2 2 2	182,643,000 183,903,400 185,163,800	611,457,000 615,676,600 619,896,200	-	794,100,000 799,580,000 805,060,000	79,410,000 79,958,000 80,506,000	238,23 239,87 241,51						
			17~18층 최상층 3층	1 1	185,163,800 186,424,200 169,891,800	619,896,200 624,115,800 568,768,200	-	805,060,000 810,540,000 738,660,000	80,506,000 81,054,000 73,866,000	241,518 243,162 221,598						
			4층 5층	1	172,631,100 175,372,700	577,938,900 587,117,300	-	750,570,000 762,490,000	75,057,000 76,249,000	225,17						
			6층 7~8층	1 2	178,112,000 181,401,000	596,288,000 607,299,000	-	774,400,000 788,700,000	77,440,000	77,440,000 78,870,000	77,440,000 78,870,000	77,440,000 78,870,000	77,440,000 78,870,000	77,440,000	77,440,000 78,870,000	232,320
4F	17	103동 3호	9~10층 11~12층	2 2	182,679,800 183,956,300	611,580,200 615,853,700	-	794,260,000 799,810,000	79,426,000 79,981,000	238,278 239,943						
			13~14층 15~16층	2 2	185,235,100 186,513,900	620,134,900 624,416,100	-	805,370,000 810,930,000	80,537,000 81,093,000	241,611 243,279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m²)

합 계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	[약식 표기)	84A	84B	84C	84D	84E	84F	합 계
	국가유공자	1	-	1	1	-	1	4
	장기복무 제대군인	1	-	1	-	1	-	3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	1	-	-	-	2
7200	중소기업 근로자	1	-	1	-	-	-	2
	장애인	-	3	3	1	1	1	9
다자녀가구	경기도거주자 (50%)	1	1	4	-	1	-	7
특별공급	수도권(서울, 인천) 거주자 (50%)	1	1	3	1	-	1	7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	5	10	2	2	2	26
		-	1	3	1	1	-	6
생애최초	3	3	6	2	2	2	18	

084.9439A 084.2465B 084.1954C 084.9149D 084.9119E 084.9873F

14 14 33 8 8 7 84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0세대

■ 대상자 1 다구는/ 기골으러 기곡에 대한 구치,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도점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다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금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양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괘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구 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건가 난타나중기원 보기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2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군인복지기본법」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 '국가유공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회(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2회(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3회(보훈보상 대상자 또는 그 유족), 제4회(5 · 18인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3회(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3회(전유공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14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금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나에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지역에 가루이는 진당에 미근되 차지 3정테어 본의 10층을 또 언제 구구역에대가 8년 - 입주자자육에 가입하여 창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지정학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에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지역구에는 데에의 입장거리도 모음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26세대

유지하고, 입수자보임소기일 현재 부수택기간이 간단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용당급 특례에 따라 '오위 정작'가당 - 입주자저축에 기입하여 청약통장 기입요건을 갖춘 재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여유리적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동보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앙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영자 및 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기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박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적 처리되어 향후 산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로는 공고일 현재 임산시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재신호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3,09,01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지사기조 : 웨다 베데이 제네트 트디크로지 기트	7의人병 의평그 사트 기자/베이지 사트이 어느 경이	D 1400/ 시중되다 미드 사트이 이트 경으 1600/\				

- 자산기준: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역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지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역에 산홍기준: '국공주택 특별법 시행구최, 제3조제간항 및 '국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0동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6세대

시의 '거수이번서 '반0세 비성의 식계은복매우사의 식계은복 보험을 한 비성 계속하여 부성(같은 세내할 수반등복표등본에 등세되어 있는 경우에 한점(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당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디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당자 및 피부당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보구시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보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물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기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소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18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제26조제(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모집광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재네입앙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광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세(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가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까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는 입주자모집광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재(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3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광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광균소득(성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외구당수별 기구당 월광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입주자모집 <del>공</del> 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3,09,01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다사기준 : 해당 세대의 정녕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시	네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 100만원) 이하에 해당히

- 자산기준: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야에 해당이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단 처형] 제2조제항에 때른 보험적으로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함을 산술평균한 금액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재최초 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른 청약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09월 11일(월)	09월 12일(화)	09월 13일(수)	09월 19일(화)	09월 21일(목) ~ 09월26일(화)	10월 04일(수) ~ 10월 06 (금)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빠른 등기 우편	개별 통보		
장	소	<ul> <li>▶ 사업주체 사이버 견본주택</li>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PC: www.applyhome.co.kr</li> <li>스마트폰앱</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li> </ul>	■ 한국부동산 - PC : www. - 스마트폰앱	applyhome.co.kr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9번길 17, 201호(오목천동)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9번길 17, 201호(오목천동)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착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될(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한)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기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단 부적적당청자가 소평가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자역은 1년, 수도권의 6개월, 위축자격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만가 산정학 및 분양전환 공공암(차주보 편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당첨 및 계약체결 幸각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점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당첨 및 계약체결 幸각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점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정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한 단 차역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청약투자 과격 기조사항

G - 150 근 단 기년 다음 이 청악자축에서 청악에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악에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에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시화

①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일 업무마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②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등에 강된답이었다.

후에 답먹이어나 않.

③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금함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관련)

수원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XII 기타 계약자 안내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단위: 원, VAT별도)								
구 분	건	건 축						
회사명	백건축그룹 건축사사무소(주)	(주)채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우보엔지니어링					
감리금액	520,000,000	200,000,000	610,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동 등으로 인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득한 주택입니다.

포증시 단호	エライビ	T004	포증/1년
제 01282023-104-0001200 호	주택도시보증공사	₩ 106,116,136,7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시행위탁사	시행수탁사(사업주체)	시공사
상 호	윈앤윈종합개발 주식회사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에스지씨이테크건설 주식회사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9번길 17, 201호(오목천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3~6층. 13층(송암빌딩)
번이든로버승	110111-//8/0121	110111-35/3801	110111-0327555

■ 사업주체 위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9번길 17, 201호(오목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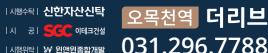
■ 분양 홈페이지: http://www.오목천역더리브.com

■ 분양 문의: ☎031-296-7788

※ 청약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나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염 규의하시기 마랍니다. 또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 및 이 공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

※ 본 분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이버 견본주택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분양 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16,490,000

822,050,000

81,649,000

82,205,000

81,649,000

82,205.000

81,649,000

82,205,000

81,649,000

82,205,000

81,649,000

82,205,000

81,649,000

82,205,000

81,649,000

82,205,000

244,947,000

246,615,000

628,697,300

187,792,700

17~18층

<sup>※</sup>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사이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 신청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지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